

안양시 이·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

제정 2018. 3. 29 조례 제2941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양시 이·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이·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이·미용서비스 산업”이란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·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.
2. “이·미용서비스 사업자”란 이·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
제3조(이·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) ①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이·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이·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육·훈련
2. 이·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페스티벌 등 행사 개최 지원
3. 이·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홍보
4. 그 밖에 이·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·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학교·단체·협회 등과 연계·협력할 수 있다.

제4조(예산지원) ① 시장은 제3조의 이·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「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5조(포상) ① 시장은 이·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·이·미용서비스 사업자,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「안양시 포상 조례」에 따른다.

안양시 이·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